

신호 바뀐 후 횡단보도 진입...그래도 처벌 받은 운전자, 왜?

신호 바뀌어 출발하려다 자전거와 사고 택시기사 “과실 없었고 상해 발생 안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아이와 출발하려던 택시가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택시기사 A(65)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2시53분께 경남 양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했다. 잠시 뒤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

으로 바뀌었다.

A씨가 차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자전거를 탄 B(12)군이 나타났다.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한 B군은 A씨의 택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로지르다 부딪혔고, 다리 부위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

결국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택시로 B군의 자

전거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고 발생에 A씨 과실이 없었고 B군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 좌우를 살피지 않았고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어야 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자전거가 횡단

보도에 진입하기 직전 차량 신호는 녹색으로, 보행자 신호는 적색으로 변경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사고 발생 시각이 하교 무렵이어서 피해자(B군)와 같은 어린이들의 이동이 빈번했다”며 “운전자로서는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이후에도 어린이가 횡단을 시도할 수 있음은 예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이 출발하기 시작할 무렵 이미 피해자의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택시를 출발시키기 전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

는지 전방·좌우를 살피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상해 부위 및 치료 기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B군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점, 공제조합에서 피해자 측에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전했다.

최이슬기자



망치와 윤석열 대통령

풍자하는 조형물이 놓여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5일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는 가운데 집회 장소에 윤석열 대통령을

돈 빌리기로 하고 시공사 선정→무산...대법 “돈 갚아야”

시공사 선정 가계약에 대여금 계약 포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로 선정해 주는 대신 돈을 빌리기로 한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경우에도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B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B추진위는 2006년 7월 주민총회에서 A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같은 해 9월 A사와 B추진위는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도급 가계약에는 A사가 B추진위에 사업 시행 비용을 빌려준다는 조항이 담겼다.

A사는 2006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B추진위와 수차례 대여 계약서를 작성했고, 총 34억5000만원을 빌려줬다. 일부 계약서에는 B

추진위 소속 조합원들이 연대보증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B추진위가 재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주가 2006년 7월 B추진위를 상대로 A사를 시공사로 선정할 것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10년 A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조합 설립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사는 2013년 10월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이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여금 계약이 유효한지 다투졌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의 근거가 되는 시공사 선정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1심은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자금 대여 계약

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은 민법상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있다.

대법원은 “2심이 공사도급 가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소비대차 약정을 체결·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사는 시공사 선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2010년 7월에도 B추진위에 돈을 빌려주었고, 일부 대여금에 대해 공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A사는 공사도급 가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대여금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재환기자

장흥 도로 차량에서 70대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특별한 외상 발견되지 않은 점, 정확한 사망원인 조사중

장흥의 한 마을 앞 차량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6일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8분께 장흥군 용산면 한 도로에 정차해 있는 차량에 A(79)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

견, 소방 등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A씨는 이날 오전 몸이 좋지 않다며 병원 진료를 받겠다고 집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

경찰은 A씨의 몸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지병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